

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49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「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2. 관련법규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

3. 주요내용

가.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
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,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
-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

나.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

○ 총괄

(단위:천원)

수 입						지 출				
계	보조금	공제료 수입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유 목적 사업비	인력 운영비 (인건비)	기본 경비 (운영비)	예치금
17,799,658	1,857,286	5,672,590	9,953,547	146,235	170,000	17,799,658	6,289,040	929,469	395,807	10,185,342

※ 보조금: 공제급여 지원금 +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

※ 기타수입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 수익금 +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
※ 고유목적사업비: 공제사업비 + 예방사업비 + 학교폭력피해지원비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

○ 수입계획은 17,799,658천원으로

- 공제급여 지원금 1,672,000천원
-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,706천원
-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167,580천원
- 공제료수입 5,672,590천원
- 예치금 회수(전년도 이월금) 9,953,547천원
- 이자수입 146,235천원
- 수익사업 전입금 120,000천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,000천원임

○ 지출계획은 17,799,658천원으로

- 공제사업비 5,793,200천원
- 예방사업비 207,800천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120,460천원
-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7,580천원
- 인건비 929,469천원
- 운영비 395,807천원
- 차년도 예치금(차기 이월금)은 10,185,342천원임

2017년도
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
운용계획서



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
The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I. 기금운용계획 총괄

1. 기금개요

가. 설치근거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

나. 설치연도 : 2007년

다. 기금의 조성

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라. 기금의 용도

1) 공제급여의 지급

2) 공제회의 재정 지원

3)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

4)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 지원 사업

5)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

6)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

마. 운용체계

기금운용계획 수립 - 이사회 심의·의결 - 시의회 심의·의결 -
기금운용 집행 - 결산

바. 기금재원

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수 입 계 획					
	계	전입금	보조금	예치금회수 (전기이월금)	이자수입	기타수입
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	17,799,658	5,672,590	1,857,286	9,953,547	146,235	170,000

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지 출 계 획				
	계	비용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	기본경비 (구 물건비)	예치금 (차기이월금)
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	17,799,658	6,289,040	929,469	395,807	10,185,342

3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2016년도말 조성액 ㉑	2017년도 기금운용계획		2017년도말 조성액 ㉒=㉑+㉓-㉔	증감 ㉕=㉒-㉑	
	수입㉓	지출㉔			
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	9,953,547	7,846,111	7,614,316	10,185,342	231,795

4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7년도말 조성액 ㉑	융자금 미회수채권 ㉒	총 조성규모 ㉓=㉑+㉒
합 계	10,185,342	-	10,185,342

Ⅱ. 기금운용계획 내역

1. 운용총칙

- 회계연도 : 2017년
- 예산구분 : 본예산
- 회계구분 :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
- 2) 설치목적 :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
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
- 3) 설치년도 : 2007년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1) 기금사업의 목표 :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 강화
- 2)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공제급여의 지급,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
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
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

다. 기금조성 및 운용

- 1) 기금조성 현황
 -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16년도말 조성액①	2017년도 조성계획			2017년도 말 조성액 ④=③+①	비고
	수입②	지출③	증감④=②-③		
9,953,547	7,846,111	7,614,316	231,795	10,185,342	
계				10,185,342	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2017년도 말 조성액 ^㉔	용자금 미회수채권 ^㉕	총 조성규모 ^㉖ = ^㉔ + ^㉕
10,185,342	0	10,185,342

2) 재원조성

-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 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3) 지원기준

- 요양급여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
- 장애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애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
- 간병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
- 유족급여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
- 장 의 비 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

※ 학교폭력은 요양급여만 해당함

4) 지원대상

- 학교안전사고 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- 학교폭력사고 : 피해학생

2. 자금운용계획

가.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합 계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	합 계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
전입금	5,672,590	5,752,113	△79,523	비용자성사업비	6,289,040	8,103,609	△1,814,569
보조금	1,857,286	12,349	1,844,937	융자성사업비			
차입금				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	929,469	813,541	115,928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			기본경비 (구 물건비)	395,807	441,304	△45,497
예탁금 원금회수				예탁금			
예치금회수 (전기이월금)	9,953,547	9,643,547	310,000	예치금 (차기이월금)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이자수입	146,235	139,630	6,605	예수금원리금상환			
기타수입	170,000	164,000	6,000	기타지출			

※ 비용자성사업비: 사업비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+ 학교폭력피해지원비

※ 기본경비: 업무추진비 + 일반운영비

나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·관·항·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산출내역
200세외수입	5,988,825	6,055,743	100,662	
210경상적세외수입	266,235	259,630	6,605	
214사업수입	120,000	120,000	0	
214-09기타사업수입	120,000	120,000	0	
				○ 소방사업이익금 120,000,000원
216이자수입	146,235	139,630	6,605	
216-01공공예금이자수입	146,235	139,630	6,605	
				○ 이자수입 124,841,070원 - 보통예금이자 200,000원 - 단기운용이자 9,460,000원 - 정기예금이자 96,899,070원 - 법인세환급금 18,282,000원 ○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자수입 - 예금이자 21,393,930원
220임시적세외수입	5,722,590	5,796,113	△73,523	
222부담금	5,672,590	5,692,113	△19,523	
222-02일반부담금	5,672,590	5,692,113	△19,523	
				○ 공제료수입 5,672,589,800원 - 유치원 1,940원 × 91,026명 = 176,590,440원 - 초등학교 3,370원 × 434,731명 = 1,465,043,470원 - 중학교 6,840원 × 233,461명 = 1,596,873,240원 - 고등학교 8,510원 × 273,359명 = 2,326,285,090원 - 특수, 평생, 각종, 외국인, 방통고 등 5,160원 × 20,891명 = 107,797,560원
224기타수입	50,000	104,000	△54,000	
224-05기부금	0	60,000	△60,000	
				○ 교육청교육금교약정기간 만료

(단위 : 천원)

장 · 관 · 항 · 목	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산출내역
	224-06기타잡수입	50,000	44,000	6,000	
					○ 학교폭력구상금 50,000,000원
500 보조금		1,857,286	12,349	1,844,937	
	520 보조금	1,857,286	12,349	1,844,937	
	521 보조금	1,857,286	12,349	1,844,937	
	521-01 보조금	1,857,286	12,349	1,844,937	○ 공제급여 지원금 1,672,000,000원 ○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,706,000원 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당지원금 167,580,000원
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9,953,547	9,643,547	310,000	
	714예치금회수	9,953,547	9,643,547	310,000	
	714예치금회수	9,953,547	9,643,547	310,000	
	714-01예치금회수	9,953,547	9,643,547	310,000	
					○ 전년도이월금 7,800,000,000원 ○ 임차보증금 563,547,500원 ○ 학교폭력지원기금 전년도이월금 1,590,000,000원
수 입 합 계	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	

다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	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
유아및초중등교육	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
사업비		6,001,000	7,994,649	△1,993,649
공제사업비		5,793,200	7,766,149	△1,972,949
공제급여		5,617,000	7,620,349	△2,003,349
307 민간이전		5,617,000	7,620,349	△2,003,349
05 민간위탁금		5,617,000	7,620,349	△2,003,349
○ 공제급여 5,617,000,000원				
- 요양급여 310,000원 × 12,500건 = 3,875,000,000원				
- 장해급여 52,000,000원 × 16건 = 832,000,000원				
- 간병급여 15,000,000원 × 2건 = 30,000,000원				
- 유족급여 420,000,000원 × 2건 = 840,000,000원				
- 위로금 40,000,000원 × 1건 = 40,000,000원				
소송 및 의료자문료		145,800	145,800	0
301 일반보상금		145,800	145,800	0
11 기타보상금		145,800	145,800	0
○ 소송 및 의료 자문료 145,800,000원				
- 손해방지경감비용, 변호사선임료 2,000,000원 × 5건 × 12월 = 120,000,000원				
- 송무활동비 50,000원 × 2명 × 5건 × 12월 = 6,000,000원				
- 공제급여 관련 법률, 의료, 손해사정자문 등 330,000원 × 5건 × 12월 = 19,800,000원				
보상심사위원회		30,400	0	30,400
301 일반보상금		30,400	0	30,400
09 행사실비보상금				
○ 보상심사위원회 30,400,000원				
- 참석일비 200,000원 × 15명 × 8회 = 24,000,000원				
- 회의경비 500,000원 × 8회 = 4,000,000원		30,400	0	30,400
- 공제급여 관련 법률, 의료, 손해사정자문 등 300,000원 × 8회 = 2,400,000원	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	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예방사업비				207,800	228,500	△20,700
예방사업비				207,800	228,500	△20,700
307 민간이전				207,800	228,500	△20,700
05 민간위탁금				207,800	228,500	△20,70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방사업비 207,800,000원 - 학교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300,000원 × 4개교 × 12회 = 14,400,000원 -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350원 × 170,000부 = 59,500,000원 - 교육청 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10,000,000원 × 3회 = 30,000,000원 - 언론사 홍보,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12,000,000원 × 4회 = 48,000,000원 -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15,000,000원 × 2회 = 30,000,000원 - 공제회 규정집 및 법규집 제작 29,000원 × 100부 = 2,900,000원 - 학교안전매뉴얼 제작배포 10,000원 × 600개교 × 3부 = 18,000,000원 - 여행자공제사업 1,250,000원 × 4분기 = 5,000,000원 						
기관운영비				1,325,276	1,254,845	70,431
인건비				929,469	813,541	115,928
급여				789,733	679,891	109,842
101 인건비				789,733	679,891	109,842
01보수				789,733	679,891	109,842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급 392,281,320원 - 3급 : 5,515,830원 × 1명 × 12월 = 66,189,960원 - 5급 : 3,582,140원 × 1명 × 12월 = 42,985,680원 - 6급 : 3,606,750원 × 2명 × 12월 = 86,562,000원 - 7급 : 2,906,590원 × 2명 × 12월 = 69,758,160원 - 8급 : 1,838,400원 × 3명 × 12월 = 66,182,400원 - 9급 : 1,683,420원 × 3명 × 12월 = 60,603,120원 ○ 정근수당 32,690,110원 × 0.5 × 2회 = 32,690,110원 ○ 명절휴가비 32,690,110원 × 0.6 × 2회 = 39,228,130원 			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	○ 정액급식비 130,000원 × 12명 × 12월 = 18,720,000원			
	○ 가족수당 80,000원 × 6명 × 12월 = 5,760,000원			
	○ 정근수당가산금 100,000원 × 11명 × 12월 = 13,200,000원			
	○ 대우수당 3,925,860원 × 0.041 × 12월 = 1,931,520원			
	○ 연차수당 209,730원 × 8명 × 18일 = 30,201,120원			
	○ 관리업무수당 5,515,830원 × 0.09 × 12월 = 5,957,090원			
	○ 직급보조비 23,640,000원 - 3급 : 500,000원 × 1명 × 12월 = 6,000,000원 - 5급 : 250,000원 × 1명 × 12월 = 3,000,000원 - 6급 : 155,000원 × 2명 × 12월 = 3,720,000원 - 7급 : 140,000원 × 2명 × 12월 = 3,360,000원 - 8·9급 : 105,000원 × 6명 × 12월 = 7,560,000원			
	○ 퇴직연금 17,843,633원 × 12명 = 214,123,590원			
	○ 일용직임금 50,000원 × 2명 × 10일 × 12월 = 12,000,000원			
	수당	139,736	133,650	6,086
	101 인건비	139,736	133,650	6,086
	01보수	139,736	133,650	6,086
	○ 연장근로수당 58,141,800원 - 5급 : 24,160원 × 1.5 × 18시간 × 1명 × 12월 = 7,827,840원 - 6급 : 24,800원 × 1.5 × 18시간 × 2명 × 12월 = 16,070,400원 - 7급 : 19,170원 × 1.5 × 18시간 × 2명 × 12월 = 12,422,160원 - 8급 : 12,290원 × 1.5 × 18시간 × 3명 × 12월 = 11,945,880원 - 9급 : 10,160원 × 1.5 × 18시간 × 3명 × 12월 = 9,875,520원			
	○ 이사장업무수당 500,000원 × 12월 = 6,000,000원			
	○ 특수업무수당 80,000원 × 11명 × 12월 = 10,560,000원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직수당 5,280,000원 - 부 장 : 100,000원 × 2명 × 12월 = 2,400,000원 - 팀·차장 : 60,000원 × 4명 × 12월 = 2,880,000원 ○ 성과급 4,979,570원 × 12명 = 59,754,840원 			
	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
	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
	203 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
	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추진비 30,000,000원 - 이 사 장 : 700,000원 × 12월 = 8,400,000원 - 사무국장 : 600,000원 × 12월 = 7,200,000원 -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,200,000원 × 12월 = 14,400,000원 			
	일반운영비	365,807	411,304	△45,497
	일반운영비	365,807	411,304	△45,497
	201 일반운영비	341,807	390,904	△49,097
	01 사무관리비	280,807	329,904	△49,097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국운영관련비용 280,807,230원 ○ 통신비 31,140,000원 - 신문구독 15,000원 × 3부 × 12월 = 540,000원 - 전 화 500,000원 × 12월 = 6,000,000원 - 인 터 넷 550,000원 × 12월 = 6,600,000원 - 우 편 료 1,500,000원 × 12월 = 18,000,000원 ○ 자산취득비 15,000,000원 - PC 본체 1,500,000원 × 5대 = 7,500,000원 - 모 니 터 300,000원 × 5대 = 1,500,000원 - 프 린 터 500,000원 × 2대 = 1,000,000원 - 사무용가구 500,000원 × 10대 = 5,000,000원 (책상, 의자, 캐비닛 등) ○ 인쇄비 100,000원 × 12월 = 1,200,000원 ○ 특근매식비 7,000원 × 6명 × 15일 × 12월 = 7,560,000원 ○ 업무(법률, 의료, 노무) 관련 자문료 330,000원 × 3명 × 12월 = 11,880,000원 ○ 4대보험사업주부담금 64,759,230원 - 건강보험 56,536,000원 × 3.06% × 12월 = 20,760,010원 - 장기요양 56,536,000원 × 3.06% × 6.55% × 12월 = 1,359,780원 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- 연금보험 56,536,000원 × 4.5% × 12월 = 30,529,440원 - 고용보험 56,536,000원 × 0.9% × 12월 = 6,105,880원 - 산재보험 56,536,000원 × 0.885% × 12월 = 6,004,120원 ○ 맞춤형복지포인트 681,500원 × 12명 × 2회 = 16,356,000원 ○ 직원교육훈련비 8,200,000원 - 보험·의료 연수 500,000원 × 4명 × 2회 = 4,000,000원 - 중부권직원연수 100,000원 × 6명 × 4회 = 2,400,000원 - 중앙회직무연수 100,000원 × 6명 × 3회 = 1,800,000원 ○ 직원체육행사경비 100,000원 × 12명 × 2회 = 2,400,000원 ○ 지급임차료 73,872,000원 - 사무실 임차료 1,100,000원 × 12월 = 13,200,000원 - 사무실 관리비 4,000,000원 × 12월 = 48,000,000원 - 복합기 임차료 165,000원 × 12월 = 1,980,000원 - 업무용차량렌트 676,000원 × 12월 = 8,112,000원 - 공기청정기렌탈 31,000원 × 5대 × 12월 = 1,860,000원 - 정 수 기 렌 탈 60,000원 × 1대 × 12월 = 720,000원 ○ 지급수수료 9,840,000원 - 세 무 기장수수료 400,000원 × 12월 = 4,800,000원 - 홈페이지유지보수 200,000원 × 12월 = 2,400,000원 - 전산통신유지보수 170,000원 × 12월 = 2,040,000원 -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 50,000원 × 12월 = 600,000원 ○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00,000원 × 12월 = 3,600,000원 ○ 홈페이지 고도화 비용 11,000,000원 × 1회 = 11,000,000원 ○ 잡비(청소, 사무용품, 탕비실물품 등) 600,000원 × 12월 = 7,200,000원 ○ 이사회 등 회의비 16,800,000원 - 참석수당 200,000원 × 17명 × 4회 = 13,600,000원 - 회의경비 500,000원 × 4회 = 2,000,000원 - 회의록속기비용 300,000원 × 4회 = 1,200,000원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	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		02 공공운영비				
		○ 중앙회 분담금	61,000,000원	61,000	61,000	0
		202 예비		24,000	20,400	3,600
		01 국내여비		24,000	20,400	3,600
		○ 근무지내·외 출장여비	24,000,000원			
		- 관내출장비				
		20,000원 × 6명 × 10회 × 12월 = 14,400,000원				
		- 관외출장비				
		200,000원 × 2명 × 2회 × 12월 = 9,600,000원				
	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		167,580	0	167,580
	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		167,580	0	167,580
	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		167,580	0	167,580
		307 민간이전		167,580	0	167,580
		05 민간위탁금		167,580	0	167,580
		○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비용				
		1,156,000원 × 10건 × 12월 = 138,720,000원				
		○ 상담자문위원회	14,340,000원			
		- 참석수당				
		200,000원 × 7명 × 6회 = 8,400,000원				
		- 회의경비				
		490,000원 × 6회 = 2,940,000원				
		- 자료제작·회의록속기비용				
		500,000원 × 6회 = 3,000,000원				
		○ 법률 및 의료자문				
		330,000원 × 2회 × 12월 = 7,920,000원				
		○ 상담지원제도 홍보				
		1,650,000원 × 4회 = 6,600,000원				
		학교폭력피해지원		120,460	108,960	11,500
		학교폭력피해지원		120,460	108,960	11,500
		학교폭력피해지원		120,460	108,960	11,500
		301 일반보상금		120,460	108,960	11,500
		11 기타보상금		120,460	108,960	11,500
		○ 학교폭력피해지원비	120,460,000원			
		- 심리상담 비용				
		1,000,000원 × 50건 = 50,000,000원				
		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				
		1,000,000원 × 50건 = 50,000,000원				
		- 구상권행사경비				
		1,650,000원 × 10회 = 16,500,000원				
		- 법률자문료				
		330,000원 × 1회 × 12월 = 3,960,000원				

(단위 : 천원)

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감
	차기 이월금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	차기 이월금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	차기 이월금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	602 예치금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	01 예치금	10,185,342	6,353,185	3,832,157
	○ 차기이월금	8,644,407,620원		
	- 이월금	8,080,860,120원		
	- 임차보증금	563,547,500원		
	○ 학교폭력피해지원비	1,540,933,930원		
	- 차기이월금	1,540,933,930원		
지 출 합 계		17,799,658	15,711,639	2,088,019

3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		집 행 액							잔액 ①-②
	계②	전입금	보조금	공제료 수입	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③	공제-예방 및 상담 지원비	학교 폭력 지원비	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 비	차입 금 원리 금 상환	예수 금 원리 금 상환	기타 지출	
~2006년 까지	44,468	9,307		23,014			12,147		29,378	25,495		3,883				15,090
2007	2,990	42		2,220			728		3,765	3,180		585				-775
2008	2,988	30		2,191			647	120	3,149	2,511		638				-161
2009	3,947	30		3,201			596	120	3,496	2,809		687				451
2010	4,402	30		3,652			600	120	3,905	3,132		773				497
2011	4,245	30		3,518			577	120	4,709	3,795		914				-464
2012	6,145	30	1,668	3,710			617	120	5,679	4,441	71	1,167				466
2013	4,858	60		3,895	52		731	120	7,512	6,104	70	1,338				-2,654
2014	5,543			4,744	53		626	120	7,963	6,624	92	1,247				-2,420
2015	6,123	60	175	5,445	62		261	120	6,124	4,930	88	1,106				-1
2016	6,067	60	12	5,692			139	164	9,358	7,620	109	1,629				-3,291
2017	7,846		1,857	5,673			146	170	7,614	6,169	120	1,325				232
계	99,622	9,679	3,712	66,955	167		17,815	1,294	92,652	76,810	550	15,292				6,970

* 2016년, 2017년도는 예산액 기준임

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 및 예탁액				비 고
		2015년도말 현재액	2016년도말 현재액①	2017년도말 현재액②	증 감 (②-①)	
합계		10,029,382	6,353,185	10,185,342	3,832,157	
	우리은행	1,700,000	1,000,000	1,000,000	0	
	농협은행	7,765,835	4,789,638	8,621,795	3,832,157	
	임차보증금	563,547	563,547	563,547	0	

* 2016년, 2017년도는 예산액 기준임